

『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

2016년 10월 21일

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

- 출연 예정액 : 금62백만원

-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

- 출연근거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

-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114조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2016년도 출연금 51,519천원 대비 11,358천원 증가한 62,877천원을 계상하였으며(전 전년도 보통세의 0.015%를 출연), 2017년도에 62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 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,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